

정상진
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설
전화 75-7834

제 741 호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1979. 11. 15.

전화 75-6090

시 보

차례

◎ 조례

제 1375 호 : 서울특별시조례충개정조례	3
제 1376 호 :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 등에 관한조례충개정조례	3

◎ 훈령

제 515 호 : 서울특별시 상수도파장사무처리규정개정규정	4
---------------------------------------	---

◎ 고시

제 46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470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지적승인	15
제 471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	16
제 472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473 호 :	도시 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	17
제474 호 :	도시 계획시설 (휴공용지) 결정 및 지적승인	17
제475 호 :	도시 계획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18
제476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	18
제479 호 :	도시 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	19

(◎) 공 고

제384 호 :	도시 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 계획 공람공고	20
제387 호 :	동청사위치변경공고	21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11월 15일

⑤ 서울특별시조례제 1375 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5 항 중 “시의 세무 1 과장, 세무 2 과장 “율” 시의 세무행정과장, 과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11월 15일

⑥ 서울특별시조례제 1376 호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정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구·출장소”를 “각구”로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로구 및 동작구의 정원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서사종류별정원 표

구별	계	일반행정서사	해사행정서사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종로	100	74	1	25
중구	85	59	1	25
동대문	105	102	1	2
성동	100	97	1	2
성북	87	84	1	2
도봉	105	102	1	2

1979. 11. 15.

구별	제	일반행정서사	해사행정서사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서대문	70	67	1	2
은평	55	53	1	1
마포	45	42	1	2
용산	80	59	1	20
영등포	82	79	1	2
구로	65	62	1	2
관악	65	62	1	2
동작	60	57	1	2
강남	55	53	1	2
강동	67	65	1	1
강서	55	53	1	1
제	1,281	1,170	17	94

훈령

서울특별시상수도 파정사무처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15 호

서울특별시상수도파정사무처리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상수도파정사무처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상수도파정사무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요금

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전대장) ① 구청장은 행정
동(이하 "동"이라 한다) 단위로 수
전대장(제 1 호서식)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수전대장에는 수전번호,
수전소재지, 소유자, 구경, 양수기에
관한사항과 이외변경사항에 관하여
기록한다.

제 3 조 (수전번호) ① 구청장은 급수전
이 신설된 때에는 동별수전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동개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

② 제 1 항규정의 수전번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수
번호를 붙여 복합수전으로 할 수
있다.

1979. 11. 15.

21-5

(3) 부여한 수전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별 전체의 수전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점검카드) ① 구청장은 급수전이 개전된 때 및 매년초 새점검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검카드는 폐전된 때 및 매년말 이를 회수하여 동별, 수전번호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 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수도요금 조정, 약수기설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처분등)을 기재한다.

제 5 조 (비치용카드) ① 구청장은 매수전마다 비치용카드(제 3호서식)를 급수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점검원은 비치용카드에 점검카드와 동일한 검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6 조 (점검구역) ① 점검카드는 점검구역별로, 점검순위에 따라 일일 점검 수량을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철된 점검순위는 극히 불합리한 경우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점검구역은 동별 수전번호 단위로 일일점검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하여 각기 18개구역(18책호)으로 한다.

④ 신규 수전의 개전으로 새로이 발급된 점검카드는 점검구역이 확인될

때까지 이를 별체에 편철 관리하여 개전일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접검체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 7 조 (점검정례일) ① 급수량 점검은 점검정례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정례일에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일로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 1 책, 점검정례일은 구청장이 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해당구역의 차을 점검한다.

③ 1월 1 책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둑축장 송달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점검요령) ①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약수기 기물번호 확인
2. 약수기 정상회전 여부
3. 약수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동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칙정의 타당성 여부

② 다음 각호 1의 사유로 점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용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문이 잠겨 있을때호폐
2. 약수기가 매몰되어 있을때매몰
3. 잡애물 칙치로 점침할 수 없을때장애

4. 양수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수포	수전 점검 정례일의 양수기 점검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5. 양수기 유리가 파손되어 있을 때 초파	제 13조 (조정절차) ① 금수량 점검을 한 때에는 점침 및 조정집계표 (제 4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책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 양수기 문자판 불명일 때 문불	② 전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점검책에 대하여 계산의 정확, 점검 내용의 타당성등을 점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7. 양수기가 회전하기는 하나 회전 불량일 때 회불	③ 점검 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점검한 때에는 재점검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8. 양수기가 회전하지 아니함 때 불회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점침 및 조정집계표에 의하여 업종별조정 종합집계표(제 5호서식)를 작성한다.
9. 기타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판불	제 14조 (조정명세서작성) ① 실사와 조정집계가 완료된 점검부는 책순위대로 조정명세서(제 6호서식)를 작성한다.
제 9조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금수사용 실적유무에 불구하고 조정한다.	② 조정명세서는 작성하되 1부(갑지)는 조정결의서, 1부는 납기내수납부, 납기경과 1월이내 기간의 수납부 및 가산금 결의서로 사용한다.
제 10조 (금수관손료) ① 금수관 손료는 금수시용료와 함께 조정한다. 다만, 금수중지 및 정수처분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금수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금수사용료를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제 15조 (조정결의 및 장부마감) ① 조정결의는 매월 1일자로, 장부마감은 매월 말일자로 한다.
② 금수관 손료 조정에 있어서의 월 수 계산은 1개월 미만일수에 대하여는 이를 1개월로 계산한다.	② 조정고지없이 수납되는 수입금조정은 납입할때에, 수시조정분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 11조 (인정조정회수)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정결의(개정조정결의포함)를 할 때에는 조정결의서(제 8호서식)를 사용하여 조정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개시조정) ① 신설 금수전의 개시조정은 당해 월말에 양수기를 점검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기설 금수전으로서 금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후의 조정은 당해	

④ 조정결의가된 사항은 수입금 조정
결의대장(제 9호서식)에 등재된다.

⑤ 제 4 항의 대장에는 조정월일, 적요
조정과목, 조정전수, 금액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체납관리 카드작성) ① 납기
마감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된것은 조정명세서에 적색의 체
납일을 압날하고 체납관리카드(제 7
호서식)에 따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체납관리카드는 동별 수전번호순으
로 관리한다. 다만, 체납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준서대
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재산압류등 강제징수조치
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기록난
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전산자료이송) 구청장은 점
검 및 조정완료된 점검책을 당해책
점검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산자료실
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변경전산자료처리) ① 구청장
은, 급수전에 대하여 통사항과 기타조정자
료 내용상의 변경에 대하여 해당변
경자료 통보양식에 의하여 처리 하
여야 한다.

② 당월분의 최종변경자료는 매월 25
일까지 전산자료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 (납입고지서 구매 및 관리)
① 수도요금 및 기타징수금의 납입고
지서는 사용 1월전에 구매요구 하여

야 한다. 다만, 과태료, 추징금, 기
타 수시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구매
요구 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는 수불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지서가
해손되거나 서손 또는 납기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고지서작성및확인) ① 납입고
지서는 점검책별로 작성하되 정리
번호란에 해당계, 점검지역, 책별 번
호를 순차로 기입한다.

② 작성된 납입고지서는 착오 유무
를 재확인 하여 송달한다.

제 21 조 (수납기판)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기타 정수
금의 수납기판은 시중 금융기관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의 수납방법, 수납액, 통보등 수납
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
약에 의한다.

제 22 조 (수납집계) ① 분임수입금 출
납원은 매일 수납된 수납금에 대
하여 수입일계표(제 10호서식)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수
납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수납대
장(제 11호서식)을 비치하여 금융
기관별로 일계와 누계로 정리하여
수납현금의 이체 사항을 확인 기
록한다.

② 제 1 항의 수납일계표는 현년도,

과년도와 과정 계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납입필통지서와 영수보고서는 해당 주판계로 이송한다.

(3) 수납일 계표 또는 금융기관 수납대장 작성이 완료된 납입필통지서와 영수보고서는 해당계에서 담당구역별로 분류하여 수입일 계전(제12호서식)을 작성, 월별, 일별로 편철 보관한다.

(4) 제2항의 수입일 계전은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 표시하되 현년도는 납기내와 납기후로, 과년도는 연도별로 구분한다.

(5) 분임수입금 출납원은 각계에서 작성한 수입일 계전의 합계와 수납일 계표의 합계와의 일치여부를 매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6) 분임수입금 출납원은 매월 말 조정금액, 수난금액, 파오남액, 충당금, 환불금액, 잡액 및 미수입액을 총집계하여 수입집계부(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1)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납집계가 완료된 납입필통지서 또는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수납부(체납카드포함)에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의 수납소인에 사용될 소인의 인명과 관리자를 소입 인감대장(제1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수납소인으로 파오남이 발견된 때에는 파오남을 명시하고 충당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① 가산금 결의는 수납부로서 사용하는 조정명세서로서 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기재사항의 확인란에 과정 계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 결의가 종료되면 독촉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납카드를 확인하여 잔여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정수처분) ①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은 징수처분명세서(제15호서식)를 발부한 날로부터 2일 후에 하되 납입의무자의 변경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를 안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명령서가 발부된 경우라도 납입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급수증지정수처분수전판리)

① 급수증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수전은 급수증지 및 정수처분 수전대장(제18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카드에도

-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될 때에는 해제신청서(제 17호 서식) 접수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③급수중지한 수전중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재급수 중지나 폐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④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수질에 대해서도 접검 정례일에 확인하여 야하고 급수중지나 정수될 수전을 임의 개선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제 32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6시간 정수해제시에 발견된것도 또한 같다.
- ⑤급수중지 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조정일로부터 급수중지일까지의 급수량을 수시분으로 조정하여 정수한다.

제 27 조(정수처분해제) 정수처분 해제는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한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후 1개월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폐전) ①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 할때는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후에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봉치된 때에는 당해사

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해납액이 있을 때는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제 29 조(다량급수처관리대상) 다량급수자는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민주거용 급수와 제 6종은 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 30 조(조정량분석관리표) ①구청장은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제 19호서식에 의한 다량급수처 조정량 분석관리표(이하 "분석관리표"라한다)에 동별 구전별호순으로 명단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분석관리표의 조정량과 그 증감은 매익월 15일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③작성 완료된 분석 관리표는 매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관리점침대상) 구청장은 작성된 분석관리표에 당해월 조정량과 전월조정량과의 증감율을 증감란에 비율로 표시(감소는 적색, 증가는 청남색) 하되 계별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수전부터 순차적으로 15개이상 추출하여 당해월 관리 점검대상 수전으로 한다.

제 32 조(관리점검) ①구청장은 추출된 관리점검 대상수전을 별지 제 20호서식에 의한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 조치대장(이하 "분석결과조치

<p>대장"이라한다)에 기입하고 각 계장에게 배분하여 점검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을)지(병)지를 8근무시 간내 이송한다. ③(갑)지는 공무계에서 작업결과가 회송되어 올 때까지 동별수전 번호순으로 보관한다.</p>
<p>②수령받은 관리점검대상수전을 점검한 각 계장은 제33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분석결과 조치대장에 종합기록하고 서명한후 당해 과장계장에게 인계한다.</p>	<p>④양수기 교체요구 전표를 이송받은 공무계는 5일이내 교체완료 회송하여야 한다.</p>
<p>제33조(분석및처리) ①관리점검 실시결과는 다음 방식에 의기 검침당일 분석하여 당해월조정량과 월간 추정량을 대비분석한다.</p>	<p>⑤양수기 교체후 공무계로부터(병)지가 회송되면, 교체일자 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수전대장과 점검카드에 기록한다.</p>
<p>당일 점검지침-전회접검지침 경과일수</p>	<p>⑥교체철거한 양수기의 지침수와 봉인등이 상이 할 때에는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은후 입고하여야 한다.</p>
<p>1개월조정일수 = 추정량</p>	<p>⑦양수기담당자는 (집)지 위에 (병)지를 첨부하여 완결된 전표철에 편찰한다.</p>
<p>②분석결과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수전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제34조(확인) 구청장은 처리결과가 완료된 열후에 확인결재를 하며 진행중인 사항은 수시로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p>
<p>제35조(양수기교체) ①양수기가 불회전하거나 회전불량, 검정시험등으로 양수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기 교체요구전표(제21호서식갑을, 병)를 근무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양수기검정) 구청장은 급수 사용자 또는 과정원의 근무보고서에 의하여 양수기의 검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당해 양수기를 교체설치하고 철거 양수기를 검정의뢰하여야 한다.</p>
<p>②양수기 교체요구 전표(갑, 을, 병)가 제출되면 요구 전표대장을 정리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무계에</p>	<p>①부정급수등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근무보고서(제22호서식)에 현장약도, 자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보고서의 주소란에는 수전소재지 및 사용자의 주민</p>

등록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성명란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부정급수공사 조사서 기재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근무보고서가 제출될 때에는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제 23호서식)에 등재하고 위반급수전 처리 명령서(제 24호서식)를 발부한다.

④위반급수전 처리 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위반급수전 처리부(제 25호서식)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위반된 급수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조례위반 사항이 부정급수공사일 때에는 부정급수공사 조사서(제 2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시행자,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파테료처분) 규칙 제 29조 제 2 항 규정의 공동남부의 무자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를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그 위반자를 알 수 없을 때 급수사용자 전원

2. 공유자(합유·총유 포함) 중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유자 전원

3. 전세권 및 임대차 관계등의 빈번한 변경으로 그 위반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미 변경되어 그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가 속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제 39 조(부정급수전판리) ①부정급수전을 처벌한 후에는 부정급수전 판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감시 카드를 작성 과정원에 교부하여 감시하게 하고 감시사유가 해소 되었을 때 이를 해제한 후 감시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부정급수로 일한 급수사용료 추징금 및 과태료가 납입될 때까지 동일장소 동일인명의(동일세대포함)의 신설수도전 설치를 승인할 수 없다.

제 40 조(급수전명의변경) ①급수전소유자 명의변경은 가족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명의변경신고(제 36호서식)를 받아 처리한다.

②사용자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가 있거나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나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수전대장과 접검카드를 정리하고 채납액 등을 조사하여 즉시 수납하거나 승계의 토지를 하여야 한다.

제 41 조(파오남처리) ①파오남금이 발생한 때에는 파오남금 처리부(제 39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한 파오남금은 충당결의(제 39호서식) 또는 환부결의(제 42호)를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부결의한 때에는 각각 과오 납금 충당통지서(제 40호서식), 과오 납금 환부통지서(제 3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이 과오납금 처리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납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 41호서식)를 받아 환부결의 한다.

제 42 조 (공용급수전 관리인 지정서류 보관) 규칙 제 4 조 제 2 항 제 2 호의 신원 보증서는 제 2 호서식에 의하고 공용급수전 관리인 지정에 관계되는 서류는 수진번호순으로 편집되어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판리의 서류위에 편집한다.

제 43 조 (수도요금자동정산) ① 서물특별시금고 수도예금이나 수도적금 가입자로 월 이자로써 수도요금을 납입하는 점검카드는 우측상단에 자동 납부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② 시금고에서 자동납부자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수도예금 명의대장(제 44호서식)에 동별 통보순서대로 명단을 작성 비치한다.

③ 수도요금 자동정산 급수전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대신 수도요금 정산요구서(제 45호서식)를 시금고에 송부하고 수납부 소인란에 "자동납부"라고 표시한다.

④ 시금고로부터 수도요금 납입통지서(제 46호서식)가 통보된 때에는 자동정산원표(제 47호서식)와 자동

정산액통지서(제 47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중 자동정산액 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 44 조 (월보) ① 구청장은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월보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업종별 조정 종합집계표
2. 00월분 수입보고서(제 48호서식)
3. 00월분 급수조례 위반처분 징수상황 보고서(제 49호서식)
4. 개인(지역)별 조정실적 수입보고서 및 징수실적 상황표(제 50호서식(1)(2))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사항은 익월 5일까지, 기타는 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제 1호내지 제 3호를 삭제하고 별지제 2호 및 제 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제 3호서식 "수도계량기 겸침 카드"를 "비치용 카드"로 제 24호서식 "사고급수전 처리작업명령서" 및 제 25호서식 "사고급수전 작업처리부" 중의 "사고"를 "위반"으로, 제 36호서식 "명의변경신청서"를 "명의변경신고서"로, 제 38호서식 "과오납금환불통지서"를 "과오납금환부통지서"로, 제 40호서식 "과오납금충당서"를 "과오납금충당통지서"로 제 42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과오납금환부결의서"로, 제 43호서식 "과오납금환부서"를 "과오납금환부명령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41 호 시 보 1979. 11. 15 21-13

(별지제 2호서식)

신원보증서

00 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000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원보증인 “을”은 000를 공용급수전(수전번호) 관리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용급수전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2 조 본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 3 조 “을”은 최고의 학번권 및 적색의 학번권을 포기한다.

제 4 조 “갑”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용급수전 관리인 000에게 공용급수전 관리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례가 있어 이로인하여 “을”的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서명捺印하고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1)

성 명

을: 주 소

(2)

성 명

첨부서류: 1. “을”的 인감증명서 1통

2. “을”的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 제 1 조 000란에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21-14 제 741 호 시

四

1979.11.15

(별지 제 18 호서식) 금수증지 및 정수처 분수류 전대장

21·16 제 741 호 시

보 1979.11.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1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 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3 호 (79.8.10)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동광고제 287 호 (79.8.24)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17

서 울 특 별 시 장

- 1) 사업시행지 : 도봉구 미아동 327-4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 인가
- 3) 사업시행면적 : 330.6 m² (100평)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도봉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나. 준공예정년월일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별첨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2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17

서 울 특 별 시 장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69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 행 허 가

1. 서울시 고시제 159(73.9.25)로
지적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
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허가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파 및 은평구청도시정비과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은평구 녹번동 63-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학교) 선명상업전수학교
3. 면적 및 규모 : 1,028 평
4.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중구만리동 1 가 54-5, 경홍학원, 김일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1980. 11. 30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
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파와
은평구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470호

도시계획시설(수도)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17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수 도	강서구신월동산 68-3 일대	153,510	

○ 별첨 ▎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제 741 호

보

1979.11.15

21-17

가.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공용의 청사	판암구상도동 198-22, 43	100 평	상도 4동부지
"	"	대방동 396-11	71.6"	대방동부지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3 호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전

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17

서 울 특 별 시 장

o 지적승인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적 (m ²)	비 고
유통업무설비	강동구 가락동 298 일대	516,000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4 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17

서 울 특 별 시 장

21-18 제 741 호 시

보 1979.11.15

○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공用 풍지	서대문구 현저동 104-69 일대	486㎡ (147명)	
신 설	공用 풍지	용산구 한남동 469 일대	4,115㎡ (1,244.8평)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5호

도시계획시설 (전기 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전기 공급설비)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17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전기 공급설비	종로구 육인동 45-1 부근	5.127㎡ (1,550.9명)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사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21

서울특별시장

제 741 호 시 보 1979. 11. 15 21-19

o 노선 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130	상월곡동 36-2	상월곡동 26-5	
"	"	3		220	오류 81-53	오류산 5-4	
"	"	"		25	" 81-120	" 81-59	
"	"	2		70	" 3-8	궁동 192-8	
기 정	"	3		140	" 81-137	오류산 5-4	
변 경	"	"		"	"	"	폐지
기 정	"	"		190	개봉 141-55	개봉 154-51	
변 경	"	"		"	"	"	폐지
기 정	"	"		80	" 146-20	" 146-22	
변 경	"	"		"	"	"	폐지
기 정	"	"		65	고덕 622-1	고덕 663-1	
변 경	"	"		"	"	"	폐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79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 및 변경

- 당시 도시계획 판내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조서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 11. 21

서 울 특 별 시 장

구 分	시 설 명	위 치	면적 (m ²)	비 고
신설	구의국민학교	성동구 모진동 4-1 일대	13,441 (4,066평)	

21-20 제 741 호 시

보 1979.11.15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신설	방학국민학교	도봉구 방학동 302 일대	13,752 (4,160평)	부지내 소로폐지
기정	홍익중고등학교	성북구 성북동 151 일대	35,551 (10,754평)	
변경	"	"	34,520 (10,442평)	312 평축소

* 별첨 도면 생략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성	소로	3 류		6 m	100m	도봉구 방학동 302	도봉구 방학동 산 51-1	
변경	"	"		"	"	"	"	폐지
기정	소로	3 류		6 m	80m	도봉구 방학동 304-3	도봉구 방학동 304-4	
변경	"	"		"	"	"	"	폐지
신설	소로	3 류		6 m	80m	"	"	

* 별첨 도면 생략

[공 고]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
람에 공한다.

③ 서울특별시공고제 384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정사)

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7호 (79. 5. 15)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공용의정사) 실시계획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수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관련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첨비과 및 재무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

1979.11.15

서울특별시장

제 741 호 시

보 1979.11.15 21-21

공람개요

1. 사업시행자 : 은평구 녹번동 77-3 외
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공용
의청사) 은평구청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년월일 :

나. 준공예정일 :

5.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사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목·지적

사업명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소유자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은평구 녹번동 77-3	대	93	녹번동 77-3 김원기
	" " 77-4	"	73	" 77-4 박순자
	" " 87-4	"	26	종로구 가회동 149 손창근
	" " 77-5	전	26	"
	" " 77-6	대	413	"
	" " 79-4	"	2,932	"
	" " 87-1	"	1,560	"
	" " 84	"	3,451.9	"
	" " 87-2	"	245	"
9 필지			8,819.9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87 호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

동청사 위치변경 공고

1979.11.15

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 위치변경 내용

동명	변경내용		이전일자
	변경전	변경후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 175-6	천호구 회지구 379 구회 1.나호	79.11.20
암사제2동	" 암사동 514-4	암사구 회지구 115 구회 2호	79.11.20
성내동	" 성내동 5-4	강동구 성내동 303	79.11.20